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21가합504611 판결 [사전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복

담당변호사 정태화

피 고 1. B

2. 주식회사 C

3. D

변 론 종 결 2021. 6. 10.

판 결 선 고 2021. 6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374,856,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166,584,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[별지 1]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

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D는 피고 B에게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.

12. 11. 접수 제147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가.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사이에 [별지 1]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,584,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D는 원고에게 166,584,7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5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6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사이에 [별지 1]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D는 원고에게 166,584,7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2]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나. 피고 주식회사 C, D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일부기각 부분

가.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[별지 1]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나,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, 원고가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.

나.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[별지 1]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, 이 판결 확정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재판장 판사 한정석, 판사 김현희, 판사 강석규

별지